

2020년 웅양면 종합감사 결과보고

I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20. 2. 17. ~ 2. 20. / 4일간
- 감사범위 : 2017. 4. 1. ~ 감사일 현재
- 감사인원 : 감사담당주사 등 6명

II 주요 지적사항

1 예산회계분야 : 5건

1) 공공예금계좌 발생 예금이자 세입조치 미이행(시정, 재정상 조치)

- 「지방회계법」 등에 따라 출납이 완결된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예산 외의 수입은 모두 현 회계연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함에도 2019년까지 일반지출계좌 등 3개의 공공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총 *,***원 중 *,***원을 감사일 현재까지 세입에 편성하지 않는 등 회계업무처리의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2) 강사료 원천징수 업무 소홀(시정, 재정상 조치)

- 「소득세법」에 따라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을 일시적으로 기타소득에 대해 필요경비를 적용하여 원천징수액과 기타법규에 따라 공제할 금액이 있는 경우 공제액과 채권자 지급액을 구분하여 원천징수 업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웅양면에서는 2018. 5월 6개의 강의에 대한 강사료 2,480천원을 강사에게 지급하면서, 필요경비 공제비율(70%, 2018.4.1. ~ 2018.12.31.)을 감안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함에도 공제율을 80%로 적용함으로써 소득세등 **,***원을 과소 징수한 사실이 있음.

3)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소홀(시정)

- 「거창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읍·면의 경우 세입세출회현금출납원은 읍·면 지출업무담당자 또는 읍·면 사무업무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세입세출회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회현금실무담당자를 별도 지정하여 2인 이상이 업무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웅양면에서는 2017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세입세출회현금출납원과 실무담당자에 대한 업무분장을 하지 않고 세입세출회현금출납업무를 관리하였으며,
- 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에도 2017. 3월부터 2018. 6월까지 지출원이 세입세출회현금출납원란에 날인하는 등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4) 세입세출회현금관리 소홀(시정)

- 「거창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세입세출회현금출납원은 세입세출회현금출납부를 비치하고, 장부에는 세입세출결의서 또는 수입과 지출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에 따라 기재 원인이 발생할 때마다 즉시 이를 기재하여야 함.
- 웅양면에서는 2017. 3월부터 2020. 감사일 현재까지 수납과 반환건에 대해 미기재하거나 세입세출회현금 계좌에서 발생한 날짜와 상이하게 기재하는 등 세입세출회현금출납부 정리를 소홀히 하여 2020. 2월 감사일 현재 출납부와 계좌의 실제 잔고가 불일치되게 관리한 사실이 있음.

5) 관외출장여비 집행기준 미준수(시정, 재정상조치)

- 「공무원여비규정」 및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하고, 자가용 동승자에 대해서는 운임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웅양면에서는 2017년 10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회에 걸쳐 *명의 관외출장 여비를 집행하면서 자가용 동승자에 대한 운임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2) 건설분야 : 3건

1) 건설공사 산업안전관리비 정산업무 소홀(시정, 재정상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되고,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는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고, 발주자는 수급인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에도
- 용양면에서는 「@@마을 농로정비공사」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증빙자료(사진등)를 미첨부, 「&&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대하여 안전관리비의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되는 “공사안내간판” 등을 감액 조정하여야 함에도 감액을 하지 않고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2) 건설공사 설계검토 소홀 및 부적정(시정, 재정상 조치)

- 「건설기술진흥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등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해야 함에도
- 용양면에서는 「##세천정비공사」 등 4건에 대하여 설계내역과 실제사토장의 사토거리의 차이가 있음에도 설계변경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준공하여 공사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3) 건설공사 폐기물처리 확인 소홀(시정, 재정상 조치)

- 건설공사 등을 시행함에 있어 건설현장에 발생된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폐기물

배출시 10톤 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 최종 처리업체 확인서 등을 10톤 이상인 경우 전자정보처리시스템 확인, 중량계근표 등 증빙서류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용양면에서는 「\$\$\$ 용·배수로 정비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폐기물 처리비 ***천원에 대하여 전자정보처리 시스템, 중량계근표 등 건설폐기물에 대한 적정처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준공처리하는 등 건설폐기물 처리 확인업무를 소홀히 하여 *,***천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3) 복지분야

1) 기초생활수급자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 업무 소홀(시정)

- 「장애인복지법」,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라 스스로 급여를 사용·관리할 능력이 부족한 가구의 경우 급여관리자를 지정하고 반기별로 부적정 급여관리의 개연성이 높은 가구를 중심으로 현장 확인 후 점검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하며, 수급자 본인이 스스로 급여를 관리·사용을 원할 경우, 스스로 금전소비가 가능한지 여부를 점검하여 복지급여 본인관리 확인서를 수리 후 급여관리 제외 대상으로 관리하도록 해야 함에도
- 용양면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000 등 5세대에 대하여 의사무능력자에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급여관리 지정을 하지 않았으며, 수급자 본인급여관리 사유로 급여관리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은 복지급여 본인관리 확인서를 수리 및 보관하여야 하나 2018년 3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급여관리자를 지정하거나 본인관리 확인서를 청구하지 않아 기초생활수급자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2) 장애인 장애등급 재판정 미이행(시정)

- 「장애인복지법」, 「2019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에 따르면 읍·면장은 주기적으로 또는 의사의 소견 등에 의한 재판정을 실시

하도록 하여 등록장애인의 장애등급이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하고, 재진단 기한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 재판정 안내를 통보하고 재진단 1개월 전에 재판정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등록 재판정 촉구서」를 통지하여 1개월 이내 장애진단서 등을 제출하여야함을 안내하여야 함 .

- 웅양면에서는 등록장애인 ★★★에 대해 장애재진단 기한일 3개월 전 재판정 통보 안내하였으나 이후 재판정 촉구 및 장애등록 취소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재판정 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재판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등록장애인 장애재판정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3) 장애인 복지카드 및 장애인 자동차 표지 관리 업무 소홀(시정)

- 「2019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1, 2」 따라 읍·면·동장은 장애인의 사망, 주민등록이 말소, 장애인 등록 취소, 유효기간이 도래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유효하지 않은 장애인등록증 등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반환기간을 2주 후로 지정하여 장애인등록증 반환 통보서를 송달하여 복지카드를 회수하고 폐기하도록 하여야 하며,
- 장애인이 사용하는 차량의 변동, 말소 그리고 차량번호의 변경 사항 등 정기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자동차 표지를 관리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웅양면에서는 감사일 현재까지 장애인 사망자 ○○○ 등 15명에 대하여 장애인등록증 반환 통보서를 미발송하였으며 복지카드를 회수 및 폐기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또한, 장애인 사망자 ○○○ 등 5명의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미회수하여 회수·폐기 처리를 하지 않아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4) 읍면 통합사례관리비 지출 부적정(주의)

- 「2018년 희망복지지원단 업무 안내」에 따라 ‘통합사례 관리 사업비 집행지침’의 홍보물품 제작 및 구입 배포 시 유의사항에

따라 읍·면·동장은 사업비 중 기타 운영비의 홍보물품 제작 및 구입 배포 시 1인당 1회 제공범위 1만원 이내 물품가액으로 한정하여 지출토록 규정하고 있음.

- 웅양면에서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위한 홍보를 위한 물품 구입함에 있어 통합사례관리 사업비 집행 지침에 명시된 1인당 제공범위 1만원 이내 물품가액을 초과하여 집행하여 사업비를 부적정하게 지출한 사실이 있음.

5)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보조사업 정산 검사 소홀(주의)

- 「지방재정법 제32조의6」, 「경로당 회계운영 투명화를 위한 경로당 보조금 집행 및 정산안내」 등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는 보조사업 관련 법령에 따라 반드시 정산을 하여야 하고, 정산 검사 시 보조사업의 목적대로 집행여부 및 보조사업의 과다 정산여부, 증빙서류 적정성 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웅양면은 2018년~2019년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보조사업에 대해 정산검사를 실시하면서, ◇◇경로당 등 6개 경로당은 2018년~2019년 경로당 운영비 정산서의 월별 지출결의서에 작성자와 대표자의 결재를 누락하였고, ◆◆경로당 등 10개소 경로당에 지출증빙 서류가 미비되어 있으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경로당 등 9개소에 대해서는 보조금 외 부적정 집행액에 대해 반납처리를 하지 않아 경로당 보조금 정산검사 업무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4) 세무분야

1) 주민세(재산분) 과세자료 관리 소홀(시정, 재정상 조치)

- 「지방세법」 등에 따라 주민세 재산분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과세표준 및 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부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 △△△△△△, ▲▲▲▲▲▲▲▲의 각 사업장은 물적설비(공장, 창고, 사무실 등)와 인적설비(수시고용 포함)를 갖춘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로서 주민세 재산분 신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해야함에도 불구하고 2015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주민세 재산분 과세자료를 관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2) 지목변경 토지 취득세 과세자료 관리 소홀(시정, 재정상 조치)

-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에는 「지방세법」 등에 따라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 하도록 되어 있고, 미신고 납부자에 대하여는 미신고 납부 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 징수방법에 의해 취득세를 부과 징수하도록 되어 있음.
- 토지의 지목 변경으로 인한 취득 미신고 납세자에게 신고납부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자진신고하지 않을 경우 직권부과 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세자료 관리(추징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5] 산업분야

1) 귀농세대 영농정착금 지원사업 사후관리 소홀(시정)

- 「거창군 귀농인 지원조례」 및 농업기술센터의 2018년 및 2019년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 귀농세대 영농정착금 사업에 대상자를 추천하여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되면 사업 추진사항을 분기 1회 이상 확인·점검하고 사업 완료 후에는 5년간 타용도 전용, 군외지역 전출, 사업장 이탈여부 등을 연 2회 이상 점검하여 지원사업 대상자 관리카드에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함에도
- 웅양면사무소에서는 감사일 현재 2018년 영농정착금 지원 세대는 2019년 6월 이후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아니 하였으며, 2019년

지원세대는 분기 1회 추진사항과 완료 후에는 연 2회 이상 사후 관리를 하고 관리카드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2) 농지전용 토지 직불금(쌀밭조건불리) 지급 부적정(시정, 재정상 조치)

-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사업, 밭농업직접지불제사업 및 조건불리 지역직접지불제사업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 시행 규정 및 쌀·밭·조건불리지불제 사업시행 지침(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의하면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농지전용허가·신고·협약이 의제되는 경우포함) 직불금 지급대상 제외농지 규정하고 있음에도
- 웅양면사무소에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농지전용허가 등으로 직불금 지급대상 제외농지 17필지에 1,571,110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6] 주민, 기타분야

1) 주민등록 전입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소홀(주의)

- 웅양면에서는 2017년 3월 28일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주민등록법」 등에 따라 전입신고를 처리하면서 거주지의 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에는 전 거주지의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또는 전입자의 확인(다만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또는 전입자의 확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하여야 함)을 받아야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입자의 확인 또는 사실조사 없이 44건, 전 거주지의 세대주의 확인 또는 사실조사 없이 6건의 전입신고를 부당하게 처리한 바 있으며,
- 전입신고서 사후확인 시 세대주(세대원)에게 거주사실을 확인한 후 이장과 담당공무원이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9건의 세대주(세대원) 확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사후확인서를 처리함.

2) 종량제봉투 판매소 관리 소홀(시정)

-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 신고관리 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하고, 판매소의 신고·수리를 받은 자가 상호 및 명의 변경, 폐업 또는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별지 서식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 웅양면에서는 판매소의 상호변경 또는 폐업·휴업에 따른 현황 관리를 위한 관리대장이 작성·비치되지 않아 최근 신고 접수한 2개소를 제외한 3개소에 대한 지정일, 등록번호, 변경 현황 등에 대한 파악이 불가능한 점 등 판매점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3) 민방위대 교육대상자 면제처리 부적정(주의)

- 웅양면에서는 2017년 3월 28일부터 민방위교육 면제처리 업무를 처리하면서 면제신청서에 신청인의 서명이 없음에도 내부결재 없이 담당자 직권으로 면제처리(1건), 출입국기록 확인 결과 면제 처리일 이전에 교육대상자가 입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가검토 없이 면제처리(1건), 면제대상자가 신청일 당시 해외에 체류중임에도 면제대상자 본인 명의로 면제신청서 원본을 서명·제출하여 허위 서명이 의심됨에도 별다른 검토 없이 면제처리(1건)하는 등 총 3건에 대하여 부적정하게 면제처리를 한 바 있음.

4)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리 부적정(시정, 재정상 조치)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 웅양면에서는 2019년 9월 11일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미신고 이륜

자동차 운행 혐의자 통보에 따라 2019년 9월 17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구를 하였으며, 혐의자로부터 2019년 9월 29일 의견 제출서와 증빙자료 사본을 받은 바 있음.

- 과태료 부과 담당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의견제출 이유의 적정성 검토 후 과태료 부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나, 의견제출서 사본만 받았을 뿐 원본을 접수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검토 또한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